스트로 프린터 구입 특수조건

본 장비 계약에 있어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의 상대방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스트로 프린터 구입」 특수조건을 설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경기도축산진흥센터의「스트로 프린터 구입」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계약상대자”가 원활히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3조(계약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에서 정한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 사항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축산진흥센터”에 지급한다.

제4조(납품 및 검수)

① 본 제품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정품 및 신품을 공급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납품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납품 물품내역(모델, 수량 등)을 서면과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 까지 본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구제역 등 전염성 질병 발생 시 공장 또는 하차장에서 당일 최초 운행차량으로 소독 완료 후 “발주기관” 지정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품을 납품하였을 경우 당해공무원의 검수를 받는다.

제5조(대금의 청구)

① “계약업체”는 청구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시 원단위를 반드시 절사하여 청구한다.

② 대가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에 의한다.

③ “계약업체”는 청구금액의 1.5% 상당의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1.5%의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제6조(지체상금)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해당 지체상금율(1,000분의 0.8)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제7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지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발주기관”과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에 불성실하거나 제품을 부당하게 납품한 것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소급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본 제품이 규격에 미달되거나 불량으로 판명될 때.
2. “발주기관”과 상의 없이 제품 및 물량이 변경되거나 공급될 경우.
3. 납품기한을 고의로 지키지 않았을 때.
4.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제9조(부정당업자 제재)

"발주기관"이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문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결정에 의하며, 협의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일반적인 통상관례에 의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